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6. 27 선고 2019가단7028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주식회사 C

2. D

변론 종결 2019. 5. 30

판결 선고 2019. 6. 27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,394,520원 및 그 중 80,000,000원에 대하여 2018.12. 8. 부터 2019 . 3. 24. 까지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 이영풍

별지